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19나58362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19나5836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8가소24013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변론종결 2020. 5. 22.

판결 선고 2020. 6. 19.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8가소24013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원고는 애초에 피고를 포함하여 C, D을 상대로 각 금전 지급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 및 위 C, D이 위와 같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지 않아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C, D 사이의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부분에 한정된다.

○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과 D은 2018.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1408호로 'C, D, B(피고)은 2017. 10. 18.경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A(원고)에게 대출업체를 소개하여 주고 대출이 성사되면 A으로부터 대부금의 약 10% 상당을 중개수수료로 지급받아 나누어 갖기로 순차 모의한 후, C은 'E'의 이사 F에게 연락하여 A으로 하여금 주택 매매잔금 상당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소개하여 같은 달 19. G부동산 사무실에서 A이 위 대부업체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대출받는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중개하고, 같은 날 H은행 신림2동 지점에서 위 A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50만 원을 지급받은 후, C은 1,050만 원을, B과 D은 각 500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원고는, 피고가 C, D과 공모하여 원고로 하여금 불법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5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 D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유죄 판결문의 범죄사실에 피고가 C, D과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는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닌바,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에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정민

판사김병룡

판사이순형